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선박안전법」 제8조(정기검사)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6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1. 공 고 명: 「선박안전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5. 6.(수) ~ 2026. 5. 20.(수)
3. 공고내용

1. 예정된 처분	「선박안전법」제8조(정기검사)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			
2. 위반자	수상에스티(주)			
3. 위반 사실	「선박안전법」제8조(정기검사)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음 - 해당선박 : 푸름호(BSC-200005, 1.88톤) - 위반일(기간) : '25. 1. 31. ~ (360일 초과 위반)			
4. 처분 내용	과태료 500만원 (감경기준 검토 예정)			
5. 법적 근거	「선박안전법」제89조(과태료)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			
6. 의견 제출	담당부서	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담당자	장 준 혁
	주소	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	전화번호	051-609-6581
	전자우편	6hyeok@korea.kr	팩스번호	051-609-6529
	제출기한	2026년 5월 20일(수)까지		

4 기타사항

- 의견제출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(☎051-609-6581)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.